

통합발달심리센터운영세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[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통합발달심리센터]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하여 센터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현장실습교육

제2조(실습대상) 현장실습교육은 특수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2학기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특수치료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에 본 센터의 활동내용과 관련된 현장실습 교과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3조(실습교원) 실습교원은 현장실습과목이 개설된 특수치료학과(전공)의 전임 등 교과목 담당 교원이 겸직한다.

제4조(개설과목) 특수치료학과(전공)의 주임교수는 매 학기 개설되는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과목명과 학점을 학사일정에 따라 본 학교기업의 대표에게 통보하고, 학생의 현장실습교육을 위탁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습시간 및 학점인정) ①현장실습은 주당 2시간씩 15주간(총 30시간)을 이수했을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학점인정은 학기당 최대 4학점까지로 한다.

제6조(실습성적) 현장실습 성적은 일반적인 실험실습 교과목에 준하여 산출한다.

제 3 장 보상금지급

제7조(보상금의 정의) ①보상금이라 함은 학교기업 운영 및 결산 결과 발생하

7-1-6~2 제7편 산학협력단

는 순이익의 30%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.

②보상금에 관한 수혜대상, 지급액, 지급방법, 배분 등은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

제 4 장 직원 지원

제8조(직원 지원) 학교는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센터의 업무를 겸하도록 명할 수 있다.
2. 총장은 특수치료대학원의 직원이 센터의 업무를 겸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제 5 장 학교기업운영

제9조(기자재사용) 학교기업에 속한 기자재를 학교기업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 허락을 받아 센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제10조(대외협력) 본 센터는 사업과 관련하여 학생교육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, 국내외의 관련 기관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11조(상담수수료) 본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내담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평가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본다.